
문서번호 : 10-02-사무-07
수 신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담당 : 류제성 변호사)
제 목 : 개인정보보호법안에 관한 민변 의견서
전송일자 : 2010. 2. 19. (금)
전송매수 : 9매(표지포함)

개인정보 보호법안에 관한 민변 의견서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변은 개인정보 보호법안(정부제출, 의안번호 제2369호)에 관한 검토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하니 법안심사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붙임. 개인정보 보호법안에 관한 민변 의견서 1부.끝.

2010년 2월 1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백 승 현



<붙임>

개인정보 보호법안에 관한 민변 의견서

□ 대상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안(정부제출, 의안번호 제2369호, 이하 '정부안'이라 한다)을 중심으로 하되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보호법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570호, 이하 '이혜훈안'이라 한다) 및 개인정보보호법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598호, 이하 '변재일안'이라 한다)도 함께 검토하기로 한다.

□ 검토의견

1. 독립적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설치의 필요성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에 있어 독립된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가 부존재하고 감독기능이 불완전하므로 독립된 감독기구의 설치의 필요성은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인정보감독기구의 독립성이 강조되는 것은 감독을 받는 정보처리기관이 바로 정부기관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독기구가 피감독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공공기관 사이의 개인정보의 공동이용을 전자정부의 개념요소로 당연시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정부의 가치와 상반되는 개인정보보호의 가치를 충실히 실현하는 개인정보감독기구로서 기능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안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조직, 인사, 예산, 기능에 있어 전혀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법안은 독립된 감독기구가 가져야 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권한을 감독대상이 되어야 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법안의 내용은 포괄적이고 실효적인 개인정보 보호라는 헌법적 요구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등 국제적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²⁾

따라서 정부안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은 조직, 인사, 예산, 기능상 독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대폭 수정되어야 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부여된 권한은 전부 폐지되어야 한다.

1)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입법평가(성낙인 외 9명,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보고서>, 한국법제연구원, 2009)

2) 국가인권위 <「3개 개인정보보호 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안, 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안, 정부 발의안)」중 개인정보보호기구 관련 조항에 대한 의견> 참조

2.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범위 확대 필요성

(1) 개인정보파일 및 개인정보처리자의 정의

정부안 제2조 제4호는 '개인정보파일'을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동조 제5호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사업자 및 개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지 않는 자의 경우에는 법안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정부안의 입법 방향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이 막고자 하는 개인정보 오·남용의 문제는 개인정보파일 또는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용과 관련해서 일어나고 외국의 개인정보보호법들도 그 적용범위를 개인정보파일(수기파일 포함)에 의해 처리되는 또는 처리될 개인정보에 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안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³⁾

그러나 개인정보의 내용이나 민감성이 아니라 개인정보파일의 형태로 존재하는 나 아니냐 또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나 여부에 따라 법 적용대상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예를 들어 법안 제30조 제1항은 공공기관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 법적 근거, 목적 및 기간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제33조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제30조 제1항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제34조는 제33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개인정보파일의 형태로 개인정보가 존재하지 않거나,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아닌 경우 정보주체 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청구가 불가능한 매우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실제로 현행법 제5조는 "공공기관은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2조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파일대장에 기재된 범위안에서 문서로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의 열람(문서에 의한 사본의 수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유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공공기관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에 대해 개인정보파일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이를 불허한 사례가 있다. 이는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이다.

3) 개인정보보호법 제정법률안 공청회(2009.4.23) 진술인 이인호 의견서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정의를 이해훈안처럼 '업무를 목적으로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처리하는 자' 또는 변재일안처럼 '업무를 목적으로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 정의하여 법안의 적용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2) 적용 예외

법안 제48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48조(적용의 일부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
2.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
3. 공공질서 유지,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4. 전쟁·테러 등 국제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등
5. 언론, 종교단체, 정당이 각각 취재·보도, 선교, 선거 입후보자 추천 등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

법 적용제외 대상이 지나치게 넓다. 특히 제2호, 제3호, 제4호의 국가안전보장, 공공질서, 전쟁·테러 등의 규정은 지나치게 불명확하다. 현행법 제3조 제2항이 '공공기관의 컴퓨터등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중 「통계법」에 의하여 수집되는 개인정보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요청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에 비해서도 적용제외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었다.

3.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화 및 기관간 제공에 대한 제한의 필요성

현대 사회에서 정보처리의 특징은 정보의 자동적 처리와 정보파일의 결합을 통하여 다양한 기관간에 정보교환이 한결 쉬워짐에 따라 어떤 기관이 다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순식간에 자동적으로 호출하여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들을 모든 기관들이 동시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즉 최근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개인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와 공공기관 간 연동이라고 할 수 있다. 2009년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을 운영하면서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사실이

지적된 바 있다.⁴⁾ 최근 국회를 통과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안」이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에도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활용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⁵⁾ 동 법안들에 의한 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의 요건은 현행법보다 상당히 완화되어 있다. 특히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안」의 경우 검찰, 경찰, 법원이 형사사법정보망을 통해 정보를 상호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정부안 제6조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법률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특별법을 통해 정부안이 정한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다양한 개인정보를 하나의 통합법으로 일괄적으로 규제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입법형식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특히 개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데이터베이스화된 정보를 정보처리 자동시스템을 통하여 공공기관간에 연동, 공유하는 경우 특별법을 통해 통합법의 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할 때에는 범죄자와 피해자 등 상호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당사자의 개인정보가 분리보관될 수 있도록 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한 개인정보의 보존기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의 요건 강화의 필요성

(1) 개인정보 수집

정부안 제15조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기타 법령에서 정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목적 범위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동조 제1항 제3호의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라는 규정은 내용이 불명확하여 남용의 우려가 있다. 해당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을 요구 또는 허용한 경우가 아닌 한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은 금지되어야 한다.

(2)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그리고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요건에 관한 제17조, 제18조의 규정의 내용이 서로 달라 해석상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⁶⁾ 그리고 제18조의 목적 외 용도로의 이용이나

4) 김유정의원 보도자료 「개인정보 4,417만건이 저장된 CIMS, 관리는 느슨」 2009년 10월 12일 등 참조

5) 두 법안의 법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민변이 법사위에 제출한 의견서 참조

6)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

제3자 제공의 허용요건이 다소 넓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제18조 제2항 제7호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는 규정은 범죄수사 등의 목적이기만 하면 수사기관이 다른 공공기관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별다른 제한 없이, 영장을 발부받을 필요도 없이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법령에 의해 개인정보 수집, 이용의 목적이 제한된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이나 제3자 제공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

(3) 개인정보 목적의 이용 및 제3자 제공 공시

정부안 제18조 제4항은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동조 제2항 제7호의 사유(‘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 이처럼 예외를 인정할 경우 범죄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라는 명분으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용도 이용, 제3자 제공의 법적 근거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을 경우 남용의 우려가 있다. 이로 인해 정보주체가 피해를 입을 위험은 정보주체의 성명, 주민번호 등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5.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정부안 제22조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

하는 경우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민감정보로 정의하고 있다. '범죄(전과)기록, 유전자정보, 그 밖에 차별적 대우의 위험이 크거나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민감정보의 범위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동조 단서의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예외 사유 중 제3호 '공공기관이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규정내용이 불명확하고 대통령령에 의한 민감정보 처리 사유의 광범위한 확대 가능성이 있으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

6.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정부안 제23조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공공기관이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은 규정내용이 불명확하고 대통령령에 의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사유의 광범위한 확대 가능성이 있으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

7. CCTV 설치·운영 제한

정부안 제24조는 CCTV 설치·운영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CCTV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강제적으로 개인의 이미지를 촬영하고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행위이므로 ①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② 해당 근거법률을 통하여 그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하고, ③ 비례의 원칙을 엄격히 지켜야 하고, ④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⑤ CCTV를 설치·운영하는 주체는 공공이 CCTV가 설치·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공지해 주어야 하며, ⑥ 해당 법률의 준수 여부 등을 감시할 수 있는 엄격한 통제장치가 있어야 한다.⁷⁾

목적 명확성의 원칙에 비추어 동조 제1항 제5호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매우 불명확하고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사유를 광범위하게 확대할 위험이 있으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설치·운영 요건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비례의 원칙과 보충성의 원칙에 비추어 범죄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경우로서 해당 범죄의 예방을 위해 다른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어렵거나, CCTV의 활용이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그 요건은 공공시설, 주택가, 상가 등 설치 지역에

7) 김승환 「CCTV와 인권」, 범죄예방을 위한 CCTV와 인권 토론회 자료집 1~14p

따라 다르게 규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⁸⁾

또한 공지의 원칙에 비추어 동조 제4항이 CCTV 설치·운영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될 예외에 대해서 막연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만 규정한 것은 보다 구체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그 외에도 정부안에는 CCTV로 촬영된 정보에 대한 공개와 당사자의 접근권 및 수사기관 등의 활용에 대한 규정과 촬영된 화면의 보존기간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다. 그리고 CCTV 설치에 대한 영향평가 없는 공청회, 설명회 개최 등 의견수렴 절차는 형식적 절차로 그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한편 동조 제2항은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에서의 CCTV 설치를 금지하면서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구금시설과 보호시설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구금, 보호시설의 경우에도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은 다를 바 없으므로 예외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8.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정부안 제30조는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 법적 근거, 목적 및 기간 등을 행안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동조 제2항 제1호의 국가의 중대한 이익, 동조 제2호, 동조 제5호 등은 규정내용이 불명확하고 그 예외사유가 지나치게 넓다.⁹⁾ 수정이 필요하다.

9. 정보주체의 열람권

정부안의 '개인정보처리자' 정의의 한계로 인해 정보주체의 열람권이 제한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 외에도 정부안 제33조 제2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내 열람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 열람을 연기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열람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의 제한이 필요하다. 그리고 동조 제3항은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지나치게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¹⁰⁾ 그리고 열람 제한이나

8) 이은우 「수사 또는 범죄 예방 활동의 수단으로 CCTV의 활용」, 위 자료집 53~64p

9) 제30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의 안전 및 외교상의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2.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의 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3.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 「관세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4. 공공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개인정보파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파일

10)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거절에 대한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에 대한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

10. 영리적 이용 규제

정부안 제25조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직접적으로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면서 개인정보를 수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사전 고지 없이 정보주체에게 공개하기만 하면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처리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정보의 영리적 이용에 대한 규제가 너무 미약하다.

11. 집단소송제도

개인정보는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대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이 빈발하고 그 경우 동시다발적으로 수십, 수백만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소액 다수의 피해를 실질적,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서는 법안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끝.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라. 다른 법률에 따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업무에 준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